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델 연구 I : 실태 및 개선 방안*

김 용 옥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김 남 진**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곽 정 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

《요 약》

본 연구는 각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대학 규모에 구애됨이 없이 장애 대학생의 개인적·법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가칭)의 표준 모델 구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델 연구'의 기초연구에 해당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사회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몇몇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새로운 모델의 구안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해당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수가 적은 대학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음은 물론 조직 모형 및 실제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에 변화된 장애의 개념이 반영된 그리고 사회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모델의 구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제어 : 사회모델,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 학생지원센터 모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실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수교육학 내부에서도 지속적인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관련해서는 1995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대상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njkim@kaya.ac.kr)

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특례입학제도가 실시된 후 본격화되었다.

장애학생의 특례입학 제도 시행 이후, 장애 대학생들의 교육적 욕구 분석과 외국의 대학교육 서비스 실태 그리고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지원 체계 방략 등에 관한 김동연(1997)의 연구를 비롯하여 김성애·박찬웅·이해균(2003)과 이옥경(2003)은 특정 대학의 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지원 실태가 아주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성애 등(2003)은 연구대상 대학의 경우 대학입학 장애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졸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동시에 학업성취율의 저하와 중도탈락률의 증가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다. 이옥경(2003) 역시 장애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불편함을 설문 및 면담 결과를 통해 언급하면서 교육적 프로그램과 활동지원 서비스 그리고 교육 이외의 학생 활동 지원서비스와 같은 구체적인 장애인 학생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국재활복지대학(2002)과 양재신(2000)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는 장애 대학생들의 중도탈락률 증가가 중점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기초학습능력의 부족보다는 편의시설 및 교수·학습 지원 등의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결과로 해석하였다. 정정진(2004)은 이와 같은 교수·학습 지원이 각 대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 2003년 18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 결과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장애인에 대한 특례입학만 허용하고 있을 뿐, 형식적인 시설·설비 개선 정도의 편의만을 제공하는 수준이며, 어떠한 교육서비스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들이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주영(2005)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과거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와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장애인 대학교육 제도와 정책, 장애학생 선발, 장애학생 지원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조직도, 장애학생 상담 구조도, 장애학생 취업 지원 시스템,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 취업 지원 체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제시된 모형들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과 직업 재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매우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화시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는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교육대상자인 장애 대학생들의 교수·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태 조사와 대안들이 꾸준히 제시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안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정정진(2004)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음의 두 가지 요소는 여전히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즉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매뉴얼(manual) 개발과 대학 장애학

생 지원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대학의 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매뉴얼 개발은 각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명칭과 내용은 대학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각 장애영역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8852호) 제30조(장애학생 지원센터) 제1항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두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0호)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를 통해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그리고 10명 미만 재학하는 대학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두어 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 설치·운영하도록 돼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는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법률이 정한 편의 제공,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0조 제2항).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적 제안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교 내 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의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대학 규모에 구애됨이 없이 장애 대학생의 개인적 요구 및 법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가칭)의 표준 모델 구안을 위한 실제적 접근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의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표준 모델의 구안 및 제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 절실하다. 즉 좁게는 장애 대학생들의 교수-학습권 보장을 포함한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해 그리고 넓게는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장애학생이 주체적인 평생학습자로의 변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국 대학(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지원실태를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실천 가능한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 모델을 제시하는 단계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조직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모델의 구안시 반영돼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

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및 국외의 관련 문헌을 수집·분석하여 사회모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내 대학에서 운영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대학 홈페이지, 홍보용 책자, 각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자체 평가보고서 등을 일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자와 해당 기관 실무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정리하였다.

다만 연구 과정상에서는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실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 및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학들은 비교적 외형적인 규모가 큰 대학이거나 최소한 재학중인 장애대학생의 수가 타 대학에 비해서는 많은 사례에 해당하는 만큼, 소규모대학 혹은 장애대학생의 수가 적정 규모 이하인 대학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모든 대학에서 실현가능한 실질적인 모델의 구안이라는 연구 목적과도 불일치하는 바, 전국 단위의 장애대학생지원 실태는 다음 단계의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 개념의 변화: 장애의 사회모델

장애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하는 것은 장애와 관련한 의학, 재활, 교육, 복지, 정책과 같은 다양한 체계들의 목표, 다루는 방법,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장애를 생리적 기능의 문제에 의해 야기되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생리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치료, 재활훈련 등의 각종 방법이 동원된다. 이때,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쪽은 불평등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생리적 기능 보완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결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장애를 생리적 기능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보는 의학, 재활, 교육, 복지 등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접근 방식으로 장애와 관련한 지배적인 사고의 틀로 작용해 왔다.

한편,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이와는 다른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적인 기능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접근 방식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장애인 개인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Oliver, 1983). 이와 같은 주장을 전개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인 영국의 ‘격리에 반대하는 신체장애인의 모임’인 UPLAS(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는 “우리의 관점은 사회가 신체적으로 손상된 사람을 장애화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우리가 불필요하게 고립되어 있고, 사회의 완전참여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방식에 의해 우리의 손상 위에 부가된 것이다”(UPIAS, 1976 : 14)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탈시설화 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장애의 사회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로 체계화되었다. 사회모델은 장애의 원인은 개개인의 신체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사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생리적 기능의 문제에서 찾던 기존의 방식을 ‘개인모델(individual model of disability)’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하였다(Oliver, 1990). 예를 들어, “손상·결손·결함 때문에 일상생활이 곤란합니까?”라는 질문은 개인모델에 해당되는 질문이며, 이것은 다시 “손상·결손·결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당신의 일상생활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Oliver, 1990 : 7)라는 방식으로 재질문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모델의 입장이다.

장애에 대한 이 새로운 인식론은 근대 산업자본주의의 성립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유예 조치의 하나로써 장애인이라는 카테고리가 등장한 시대적인 배경에 착목하고 있다(Finkelstein, 1980).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 시기에도 ‘폐질자’와 같은 ‘신체적인 장애’에 대한 카테고리는 존재했으며(정창권, 2005), 장애인에 대한 억압의 역사는 존재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이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때로는 영적인 것으로(김찬호, 2001), 때로는 특별히 주목을 끌지 않는 상태(Groce, 1985)로 수용되는 등 근대산업자본주의의 방식처럼 획일화 된 것은 아니었다. 산업자본주의의 등장은 신분이나 성별이 아닌 노동을 사회의 주요 가치로 등장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 가능한 ‘표준화된 신체’를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면서 장애인의 신체는 구조적으로 ‘무력화(disablement)’(Oliver, 1990)되고 의료적 대상으로 획일화된 방식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근대 산업자본주의의와 함께 등장한 대규모 장애인 수용시설은 산업자본주의의 신체를 둘러싼 재편이 어떻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구조적으로 배제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써 왜 사회모델이 탈시설화 운동을 통해 체계화되었으며, 왜 사회모델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예가 될 것이다.

사회모델은 장애가 개인의 생리적인 기능의 문제로 취급되게 된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주목하여, 장애가 생리적인 기능의 문제로 설명되어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이 재활, 치료 등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은 오히려 본말전도(本末顛倒)라고 지적하였다. 이로써 사회모델은 개인의 신체를 둘러싼 사회적 대응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인에게 속한 신체적인 기능의 문제를 ‘손상 또는 신체적 장애(impairment)’로 명명하고, 이 신체적 장애를 둘러싸고 제한을 야기하는 사회적인 모든

방식을 ‘장애 또는 사회적 장애(disability)’로 구분하였다.

사회모델은 사회적 장애가 줄거나 없어지게 되면 손상 또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 역시 사회적 장애가 존재하는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石川, 1999), 장애인의 신체를 둘러싼 현실적인 사회적 장벽 해소라는 제1과제 해결을 위해 신체적 장애에 대해 말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사회모델의 전략은 “신체적 장애 역시 장애인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주요한 부분이지 않은가”, “자신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Crow, 1996; Morris, 1991)라는 장애인의 비판이 축적되면서 신체적 장애에 대해 말하지 않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2. 소수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 억압으로부터 신체의 다양성으로

사회모델의 초기 주장은 문제의 초점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에 맞춤으로써, 장애인의 주거환경, 고용, 교육, 지역 사회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였다. 이 과정은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문제제기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제까지 생리적 기능에 착목하는 접근은 장애인을 신체의 특정한 기능이나 구조가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병자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며, ‘스트레오 타입’이나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장애인에게 부여하기도 하였다(김용환 역, 1995). 또한 장애인은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로 간주되었으며, 이 비극을 극복할 책임은 개인의 몫이었다(Oliver, 1983).

그러나 사회모델의 등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호명법 역시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회모델을 체계화한 Oliver(1983 : 62)는 “장애가 비극으로 포착된다면, 장애인은 어떤 유형의 비극적인 사건이나 환경으로 취급되어 질 것이다. 반면에 장애가 사회적 억압으로 정의되어진다면, 장애인은 환경의 개별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무배려의 무지한 사회의 집합적 희생자로 간주되어진다는 것은 논리의 필연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장애를 둘러싼 인식론의 전환은 ‘정상적인 신체’를 상정한 후 이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나누는 이분대립항을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누리는 다수자로서의 비장애인과 소외와 배제를 겪고 있는 소수자로서의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이분대립항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성별, 지위, 연령, 지역, 국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차별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경험은 장애인의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공유를 더욱 확장시키게 만들었다. 이로써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애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는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장애인들의 결속력 강화로써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특히, 소수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인식은 이제

까지 의사, 재활훈련가들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던 삶의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이로써 장애를 둘러싼 문제에서 더 이상 장애인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Charlton, 1998).

이처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장애인으로 이행해 온 장애를 둘러싼 논의들은 다시, 장애인 집단적 정체성의 강조로부터 장애인 개개인의 경험 강조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장애인 내부의 차이는 때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간극 보다 더 크게 발현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장애인운동의 성과로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장애인의 삶은 개선된 데 비해 장애여성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Morris, 1991)으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의 장애인고용비율을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남성 장애인은 그 혜택을 누리는 데 비해 장애여성은 철저히 사적 영역에서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장애여성들은 “개인적인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여성주의의 슬로건을 차용하였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오래된 여성주의의 슬로건은 개개인의 삶에 투영된 사회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집단적 정체성의 강조가 놓치고 있던 개개인의 경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장벽 해소를 위한 전략적으로 간과해 온 신체적 장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사회모델 내부로 침투하게 된 것이다.

杉野(2007 : 12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모델의 가치는 사회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구분하고, 책임의 소재를 사회에 묻는 인과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적 차이가 의학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그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취급 방식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초기 사회모델은 신체에 대한 새로운 취급 방식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보다는 근대적 취급 방식의 결과로 야기되어진 사회적 장벽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장애인의 둘러싼 사회 환경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지만,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손상, impairment)에 대한 본질적인 규명은 미흡하였다.

초기 사회모델이 사용해 온 손상(신체적 장애, impairment)과 장애(사회적 장애, disability)를 이분화하는 전략은 장애가 지닌 사회성을 강조한 나머지 마치 손상은 생물학적인 본질적인 요소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수화통역사가 없는 환경을 장애라고 명명하는 전략에 의해, 들을 수 없는 상태(농聾, deafness)는 마치 ‘신체적 장애(손상, impairment)’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치환되어 버리게 되었다. 수화통역사가 없어서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장애(사회적 장애, disability)이지만,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농의 상태는 손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고유한 속성이다. 바꾸어 말해, 이와 같은 하나의 속성을 손상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듣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보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만들어 낸 것으로 손상

내지 신체적 장애는 생물학적인 본질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사회성을 지닌다.

Foucault(1975)의 표현대로, “신체야말로 바로 정치적 권력이 가장 극명하게 작용하는 하나의 장소”라고 할 때, 인간의 신체를 표준화하고 분류하는 것이 정치이며, 신체에 대한 명명 역시 언어와 함께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는 하나의 ‘기호’이다(오생근 역, 2003). 다시 말해 손상이라는 명명은 사회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써, 단순하게 말하자면 정상이라는 인위적인 기준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개념이다. 이로써 최근 사회모델은 손상이라는 기호 내지는 신체적 장애라는 이름붙임으로 장애인을 옹아매는 것으로부터, 하나의 독자적인 ‘속성’ 내지는 ‘상태’로 ‘다시 부르기’위한 전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즉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모델의 논의는 장애인의 신체를 둘러싼 사회적 변혁을 지향하는 한편, 장애인의 신체가 ‘있는 그대로’의 가치대로 평가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장애인 대 장애인이라는 대립적인 이분대립항으로부터, 신체적 규범에 대한 ‘해체’를 통해 신체적 차이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범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지원의 기본 개념

위에서 장애의 개념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모델과 사회모델에 입각한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모델은 이제까지 장애인을 둘러싼 제 환경적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새롭게 등장한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의 신체를 둘러싼 일련의 제약으로부터의 해방과 신체적 차이가 하나의 속성으로 존재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사회모델의 관점에서 고등교육 환경에 들어오게 된 장애학생은 누구이며, 이들이 사회적 억압이 없는 환경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개인모델의 관점에서 바라 본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지원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을 다시 초기 사회모델의 관점에 입각하여 재개념화 해 보면 <표 1>과 같다.

Oliver(1980)의 사회모델 관점에 근거할 때 문제의 원인은 장애학생의 신체가 아니라, 신체를 둘러싼 학교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고등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이나 각종 제도를 포함한 사회적 환경의 대부분은 비장애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은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에게 때때로 사회적 장벽 내지는 장애로 작용한다.

장애학생의 ‘신체적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고등교육 환경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장애는 장애학생을 위축되게 만들고 장애학생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일상적으로 자신의 신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

을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이러한 기대는 장애학생의 신체적 장애를 둘러싼 환경적 미비라는 사회적 책임을 간과한 채 ‘장애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장애학생의 신체 위에 덧씌워진다. Freire(1993)의 표현대로 “A가 B를 객관적으로 착취하거나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기긍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황은 무조건 억압적인 상황이다”(남경태 역, 2002: 69). 여기서 A는 장애학생을 둘러싼 고등교육 환경이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 일 수 있으며,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친구일 수 있으며,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수일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 일 수 있다. <표 1>에서는 표현상의 편의를 위해 장애학생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만을 부각시켜 논의를 전개했으나, Finkelstein(1980: 47)이 말한 것처럼 “손상을 지닌 사람들과 그 이외의 사람들 사이의 억압적 관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장애”라고 할 때 장애학생에 대한 시선, 사회적 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역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제 요소들이다.

<표 1> 초기 사회모델 관점에서 본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지원

<p>기존의 장애 개념에 따른 접근 방식</p>	<p>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다. 이 사람이 장애인인 이유는 하지마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마비는 이 사람을 걸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집에만 있는 장애인이 되었다. 이것은 해결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해결방법으로는 하지마비에 대한 예방, 치료, 재활 훈련, 교육 등이 있다. 장애인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조언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 ▽ ▽</p>	
<p>초기 사회모델 관점에 입각한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지원 개념</p>	<p>휠체어를 탄 학생이 있다. 이 학생은 장애학생이다. 이 학생이 장애인인 이유는 이 학생을 둘러싼 환경이 이 학생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단 밖에 없는 학교 건물과 단차는 이 학생을 건물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해결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해결방법으로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단차를 없애는 것이다. 장애학생은 교육 환경의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 학교에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p>

이러한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존중받지 못하는 고등교육 기관에 속해 있는 장애학생은 교육 행위 속에서 일상적인 사회 억압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지원원은 장애학생을 둘러싼 교육 환경이 사회적 장애로서 존재하지 않도록 환경을 재정비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억압 이론에만 천착하여 장애학생과 장애학생지원의 개념을 설정한다면, 장애학생은 권력 관계에서는 약자 임에는 틀

림없으나, 고등교육환경과 대립 관계에 놓여 있게 된다. 차별과 억압을 받는 소수집단의 구성원에만 머무를 때 장애학생은 사회적 제 문제에 저항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장애학생 대 비장애학생이라는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 속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고등교육 환경이 비장애학생이라는 특정 신체는 선택하여 그들을 위한 편의와 환경을 제공하지만, 장애학생의 신체는 배제한다면 구조적인 문제라는 본질은 은폐되고 특정의 가해자 집단 대 피해자 집단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을 소수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원화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체의 차이를 하나의 속성으로 인정하는 발전된 사회모델 논의를 접목시켜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지원의 개념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회모델의 발전에 따른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지원 개념

	△	△	△
신체적 차이가 존중되는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지원	휠체어를 탄 학생이 있다. 학교는 단차를 없애고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 장애학생은 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장애학생의 신체적 특성은 신체적 장애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학교는 걸을 수 있는 신체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편의시설의 일환으로 단차를 없애고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신체’라는 기준은 장애학생의 신체적 특성을 장애(impairment)로 만들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일반적인 신체라는 기준을 해체하고 다양성을 지닌 신체라는 새로운 가치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 규범은 장애학생의 특성을 다양한 신체적 차이로 존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환경은 서로의 차이가 다양성으로서 존중되는 다문화사회가 될 것이며, 장애학생은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표 2>에서 장애학생지원 개념의 설정은 <표 1>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장애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학교 내의 사회적 장벽은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것에 해당된다. <표 2>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의 신체적 특성이 손상(신체적 장애, impairment)으로 취급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 제도, 시선, 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장애의 제거에만 주목하다 보면 자칫 장애학생의 신체적인 특성은 신체적 장애라는 마치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으로 환원되기 쉽다. 신체적 장애라는 카테고리는 Turner(1996)의 표현처럼 ‘정상적인’ 신체라는 기준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생물학적인 의미라가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개념이다(임

인숙 역, 2002). 장애학생의 신체가 ‘정상’, ‘일반’, ‘보통’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로 명명되어 지는 것을 묵인한 채 얘기되어지는 통합은 일종의 시혜주의이다. 이와 같은 시혜주의적 접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신체적 장애가 생물학적인 의미로만 환원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특성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특성으로서 존중이란, 때로는 치료를, 재활을 필요로 하는 신체라는 의미까지 내포한다. 따라서 발전된 사회모델의 장애개념에서 바라본 장애학생이란 신체적 차이를 지닌 존재이며, 장애학생지원이란, 장애학생의 신체적인 특성이 손상(신체적 장애, impairment)이 아닌 ‘특성 그 자체’로써 온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체적 차이, 특성은 때로는 개성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장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채 사용되어지는 ‘개성’이라는 말은 장애학생을 억압하는 요소로 재 환원 될 수 있다. 강의실은 2층인데, 계단 밖에 없어 휠체어를 탄 학생이 수업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개성’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학생지원 개념 설정에서 있어서, 장애학생의 신체적 차이가 하나의 고유한 특성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과 사회적 장벽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채 사용되는 ‘개성’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에 유의하면서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지원의 개념을 재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소수집단의 구성원이지만, 다양한 신체적 차이를 가진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행해 가야 하는 존재이다. 이 와 같은 사회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서의 장애학생을 자신의 신체적 차이를 존중받으면서 서로의 차이가 존중되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장애학생지원의 정도’가 주요 결정 요소가 된다. 장애학생의 신체적 차이는 신체가 요구하는 적절한 지원이 수반될 때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교육적 요구’라는 기준’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수한 교육적 요구’라는 명명과 사회 모델의 접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사회적 장애에 대한 성찰이 결여 된 ‘개성’이라는 말과도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III.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장애학생이 경험하는 장애란 Oliver(1996: 30)가 지적한대로 장애학생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사회 내부에 있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장애의 첫 국면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보통’이라고 기준에 맞춰 설계된 대학의 물리적 환경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이제까지 장애학생지원체제는 대학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심 센터로서의 역할보다는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서비스 체제를 마련(정동영 외, 2004; 정정진, 2007)하는데 집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신체적 장애에만 집중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전체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구심기 구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장애의 두 번째 국면은 장애학생의 신체적 장애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 구성원의 시선이며, 부적절한 태도들이다. 정정진(2007) 역시 대학 구성원의 인식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대학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장애학생의 신체적 장애에만 집중된 서비스 체제는 현재 장애학생 특례입학제도나, 장애학생 지원서비스에 대한 비장애학생들의 역차별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학생의 '신체적 장애'만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이 겪고 있는 사회적 장애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장애학생이 겪는 불리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들어오는 많은 장애학생들은 여전히 분리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다가 대학에 들어온다(박승희, 2003). 분리교육 환경에서 운영되는 부실한 교육과정과 장애 치료만을 강조한 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과의 심각한 교육 격차를 만들었고, 이는 장애학생이 고등교육을 받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기회 제한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도 제한을 야기해 장애학생이 겪는 장애는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입된 적극적인 조치인 특례입학제도나, 장애학생 개별교수제(정정진, 2007)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이해는 부족하다. 장애학생이 겪는 사회적 장애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 부재는 대학 구성원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어야 할 장애학생지원 서비스 실행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학생이 대학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수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지원서비스에서부터 교수학습지원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지원을 필요(정동영 외, 2004)로 하지만, 이것은 비단 장애학생지원부서만이 수행해야 하는 독자적인 고유 업무는 아니다. 기숙사의 룸메이트에서부터 기숙사 직원,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들 즉 대학 구성원들 모두가 장애학생지원에 협조적일 때 지원이 제대로 수행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장애에 대한 인식을 불러올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신체적 장애에 집중된 지원서비스체제로부터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장애,

사회적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와 같은 사회모델의 관점에 입각한 지원의 개념과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장애학생지원센터 모형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장애대학의 재학 인원이 타 대학에 비해 많은 경기도 소재 H대학, 충남 소재 N대학, 경북 소재 D대학 등 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H대학은 일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교육진흥정책과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국립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H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H대학은 장애학생지원관으로 칭함)는 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장애학생지원 관련 교수가 관장을 겸하고 있다. 관장 아래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지원연구팀과 지원서비스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 직원은 관장 1명, 교육연구사 4명, 학습지원조교 16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H대학은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공개(www.hanrw.ac.kr/irw/new/intro/provision.htm)하고 있다.

충남 소재의 N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N대학은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라고 칭함)가 총장 직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장애학생 지원 관련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센터장 아래는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있다. 조직도(www.nable.or.kr)에서는 행정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 및 사업기획 및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실제로는 사업기획 및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전산운영 및 콘텐츠 개발팀, 교육정보개발팀, 학습지원팀, 대외협력팀 역시 조직도에서는 별도의 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업무는 팀 분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행정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다. 지원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은 센터장 1인 외 직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3월 기준 장애학생 재학생 수는 257명이고,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팀의 인원 비율은 37 대 1 수준이다.

경북에 위치해 있는 D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라는 기관 명칭을 사용하는데, 학생처 산하 장애학생지원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센터장은 없다. 장애학생지원 운영위원회가 비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나,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는 장애학생지원팀이 수행하고 있다(cms.daegu.ac.kr/disable). 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행정팀의 인력은 2007년 3월 기준 전담직원 3명, 겸임직원 1명, 조교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3월 기준 장애학생 재학생 수는 213명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팀(겸임 포함)의 인원 비율은 36 : 1 수준이다.

각 대학별 운영상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H대학은 별도의 관장이 선임된 부속기관으로써의 위상을 갖추고 있는 반면, N대학과 D대학은 총장 직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H대학, N대학은 하나의 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대변하는 센터

장이 있는 반면, D대학의 경우는 센터장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H대학은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교수급 이상의 센터장이 선임되어 있으며 센터장 아래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연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팀에서 수행하는 일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H대학은 연구팀 및 서비스팀 모두 관련 전공자,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 있다. N대학은 총장 직속기관이며, 기관을 대표하는 교수급 이상의 센터장이 선임되어 있다.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조직도에서는 연구팀과 실제 서비스를 실행하는 팀은 나누어 공개하고 있으나, 실제 별도의 연구팀이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력은 모두 관련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D대학은 총장 직속기관으로 학생처 산하에 있으며, 기관을 대표하는 센터장을 두고 있지 않다. 장애 관련 전문 교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연구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의 관련 전공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형 비교 및 검토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형들은 서비스 공급자 중심 모형으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장애학생의 의견 수렴, 요구 파악, 서비스에 대한 평가 등을 반영하는 방법이 모형에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특수교육 제반에서 수요자 중심이 강조되고 있는 그 이유와 철학적 배경에 대한 해안이 필요하다(김병하, 2005). 따라서 새롭게 구안될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는 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장애학생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변화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의 평가 및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장애학생대표기구) 등이 모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수평적 모형 체계 추구

검토된 장애학생지원센터 모형들은 수직적인 모형 체계로써 일방향적인, 하향식의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장애학생 지원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 조직간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만큼, 센터장에서 서비스 실행팀 그리고 장애학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직, 모든 기구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동적인 체계로 조직되어야 한다. 최근 특수교육이 교육의 책임을 담당 전문가의 역할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관련 서비스에서 복지, 지역 사회의 참여로 까지 확장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 주지할 필요가 있겠다(박승희, 2003).

3. 실질적인 조직과 업무 분장

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형들은 각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조직 및 업무 분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되기 보다는 형식적인 모형에 불과하다. 즉 전산 운영 및 콘텐츠 개발팀, 교육정보개발팀, 학습지원팀, 대외협력팀은 실제 별도의 팀 체계가 아니며, 이런 종류의 업무는 장애학생만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는 성격의 팀 역시 아니다. 언급된 조직은 대학에 기본적으로 있는 팀(부서)으로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조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학생지원센터 모형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독자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형(D대학의 경우 센터장, N대학의 경우 연구팀 전담 인력)이 존재하는가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실질적인 업무 중심 모형으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절실하다. 관련 학과 전공 교수급 이상을 센터장으로 배치한다거나 운영 규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서비스 업무 중심의 체계로 모형을 구안해야 한다.

4. 행정인력에 의한 장애학생 평가 지양

현재의 모형들은 장애학생의 특성, 요구, 학업능력, 향후 진로를 파악하여 지원을 설계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없는, 행정인력이 장애학생에 대한 대략적 평가를 통해 서비스 항목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장애학생을 평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공자를 배치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들이 개별화지원계획하에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유훈, 2005), 고등교육이라는 미명아래 행정적 편의가 우선하고 있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5. 상담기구의 설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기구가 존재하는 않는다는 점 역시 현 모형들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경험에 대한 인식 방식은 비장애학생들의 그것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즉 장애학생들은 분리된 환경, 부적절한 대학의 지원 환경, 교우관계, 건강상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은 경우, 상담을 진행하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연구조직에 장애학생을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를 배치해야 한다.

6. 취업전담 부서의 설치

고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취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형들은 이를 생략하고 있다. 따라서 적성검사, 취업능력 평가, 취업준비 계획, 교육, 취업 훈련, 알선 및 배치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이 조직은 개별화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연구팀과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7. 도우미제도의 체계적 실행

도우미는 서비스 실행하는 지원의 중요한 보조 인력에 해당된다. 직원이 장애학생을 직접적으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도우미 모집에서 도우미 교육, 상시적인 도우미 관리, 도우미에 평가, 도우미에 인센티브를 얼마나 잘하는가는 장애학생지원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본 대학들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형 및 운영 실태를 통해서는 이들 도우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들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세 개 대학에서 도우미 모집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도우미를 체계적으로 육성, 운영,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우미라는 명칭은 장애학생을 도움을 받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도우미라는 명칭을 대신할 적절한 용어의 사용 또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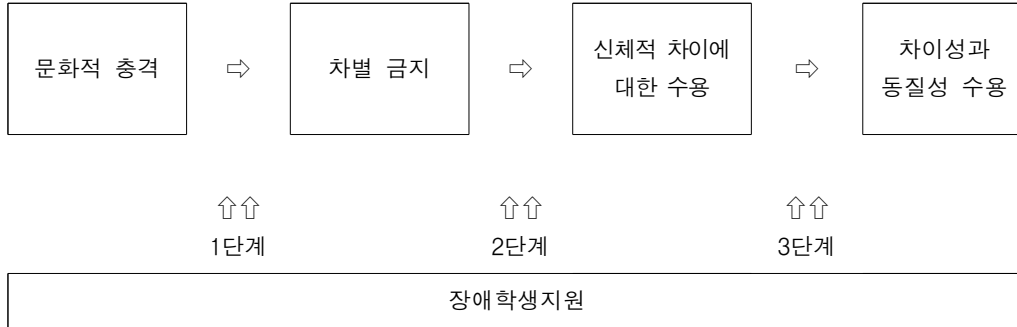
IV. 사회모델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모형의 구안 방향

장애학생의 신체적 차이가 하나의 특성으로 존중되고 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의 차이가 존중되는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기준의 유연화를 가져오기 위한 지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모형들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신체적 기준의 유연화를 가져오기 위한 지원의 절차와 개념을 모색해 보면 <표 3>과 같다.

장애학생을 둘러싼 통합 환경 구성원(비장애학생, 교수, 행정직원)의 대부분은 장애인과 만난 경험이 많지 않다. 이것은 대학에 들어오는 장애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장애학생과 비장애인 구성원들의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반응, 태도는 상이하다. 대다수의 비장애인 구성원들은 지배 문화 속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듯 자신의 문화를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이남석, 2001). 그런 면에서 비장애인

구성원들과 장애학생과의 만남은 심각한 불평등의 관계선상에서 출발한다.

<표 3> 신체 기준에 대한 유연화를 가져오기 위한 환경 지원의 절차



- 1단계: 장애학생에 대한 에티켓 지키기 교육, 차별금지 학칙 제정, 차별 행위에 대한 교육 등
- 2단계: 도우미 활동, 장애체험, 장애이해 교육, 교수 활동시 유의사항
- 3단계: 갈등 및 위기 시 개입, 도우미 활동 평가, 상담

사회모델에 근거한 지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들 간의 만남은 불평등한 관계이며, 이 불평등한 관계에서 소수집단에 속한 장애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사회모델에 근거한 지원은 비장애인 구성원들이 장애학생에 대해 가지게 되는 고정 관념이나, 편견들이 태도에서 드러나고 실제 행위로 옮겨진다면 이것은 장애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장애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 기준에 대한 유연화를 가져 오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에 있어서 1단계는 장애학생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들이 실제 차별로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학생을 만난 적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이상한 시선과 부적절한 태도로 장애학생을 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발상에 대한 용인이야 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장애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따라서 <표 3>의 1단계와 같이 문화적 충격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흔히 장애학생지원 가이드에서 등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모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1단계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학칙을 정할 수 있으며, 차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한다.

신체적 기준의 유연화를 가져 올 2단계의 지원은 대학 구성원들이 장애학생에 대해 알아가면서 ‘신체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이 장애학생에게 행위로서의 차별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장애는 없지만 신체적 기준은 더 획일화 될 수 있다. 다름에 대한 수용이나, 공감 없는 차별 행위 금지는 대학 구성원들로 하여금 장애 학생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2단계 지원의 목표는 대학 구성원들이 장애 학생의 신체적 차이를 다름으로 수용하고, 장애학생이 겪는 불편을 이해한다.

2단계에 해당되는 활동은 장애학생과 대학 구성원간의 보다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비장애학생은 직접적으로 장애학생과 관계하면서, 때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2단계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각장애학생과 함께 하면서 ‘점자’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혼자 다닐 수 있는지 알게 된다. 글이라는 것은 반드시 눈으로만 읽는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음성 파일을 빠르게 돌려 들으며 책을 읽는 장면을 접하며 자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고 있는 새로운 문화의 한 장면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장애 학생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겪는 사회적 장애에 대해서도 공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목자로 된 책 밖에 없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학생을 보면서, 신체적 차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2단계 지원에서 장애학생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지원 받을 것이다. 많은 교수들은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일 대 일 관계이기를 희망한다.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고유의 영역이니,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말아야 할 영역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사회 주류의 가치와 문화적 편견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에 대한 2단계에서의 지원은 교수 활동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장애학생의 특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교수는 청각장애학생이 수업에 참여한다면 등을 돌린 채 말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신체적 차이에 대한 수용은 3단계 지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3단계 지원의 목표는 차이성 속에 동질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장애학생과의 밀접해진 관계를 통해서, 신체적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은 다른 점보다는 유사한 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것은 역으로 같은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은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해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단계 지원에 해당되는 활동으로는 장애학생과 대학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유발되거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여 관계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중첩된 체험”(서덕희, 2007)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활동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도우미 활동 후 감상문이나, 장애학생 지도 평가, 상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고등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대학에서의 장애 대학생 지원은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장애 대학생 지원에 대한 대학의 의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델 연구’의 기초연구로써 장애 학생 지원에 대한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는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장애대학생 지원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모형의 구안 방향 등을 소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각 대학의 현재 모델은 장애학생의 수가 적은 대학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 모형 및 실제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모형 및 운영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형상에는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부서가 많고 형식적인 모형이다. 둘째, 부처간의 협의만을 해야 하는 부서임에도 별도의 담당이 있는 것처럼 돼있는 경우도 있다. 즉 대부분의 산하조직은 협의 부서임에도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부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의 특성, 요구, 현 학업능력, 향후 진로를 파악하여 지원을 설계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없으며 넷째,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들을 심리적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의 활용이 미흡하다. 다섯째, 고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취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함에도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거나 직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취업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도우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신체적 차이에 대한 유연화를 가져오기 위한 지원의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의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개념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장애학생에만 주목한 지원, 방법과 절차에 주목한 지원이 아니라, 장애학생을 신체적 차이를 가진 다양성을 지닌 존재로서 어떻게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확장된 지원 개념에 대한 모색이다. ‘일반’, ‘정상’, ‘보통’이라는 신체 기준으로부터 장애학생의 신체적 차이는 ‘손상(impairment)’으로 명명되어진다. ‘일반’, ‘정상’, ‘보통’이라는 신체 기준의 ‘유연화’로부터 장애학생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반응의 유연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장애학생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반응의 유연화는 결국 차이의 다양성에 대한 유연화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이의 다양성에 대한 유연화는 서로의 차이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져와서 대학

환경을 서로의 차이에 대한 용인이 이루어지는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장애학생의 신체에 대한 집중으로부터, 차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방법과, 절차, 내용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모델에 기초할 때 대학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환경의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각 대학에 맞는 장애학생종합센터 모델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동연(1997). 장애학생 특례입학 제도에 따른 대학교육 지원 체계연구. **미술치료연구**, 4(2), 1-58.
- 김병하(2005).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특수교육(학)적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40(1), 1-22.
- 김성애·박찬웅·이해균(2003).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 김주영(2005).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제도와 방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찬호(2001). **사회를 보는 논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승희(2003). **한국 장애학생 통합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서덕희(2007). 어윤치미크에게 말 걸기- 한 몽골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본 다문화교유-. **교육인류학연구**, 10(2), 233-267.
- 양재신(2000). 장애인 대학입학 장애대학생의 교육환경. **현장특수교육**, 11월호, 40-44.
- 이남석(2001). **차이의 정치-이제 소수를 위하여**. 서울: 책세상.
- 이옥경(2003). 장애인 대학생지원의 현황과 발전 전망.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출범식 및 기념 워크숍 자료집, 25-36.
- 이유훈(2005). **개별화 교육계획의 구안과 실행**. 서울 : 교육과학사.
- 정동영 외(2004). **대학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편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정정진(2004). 대학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9(3), 1-23.
- 정정진(2007).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1) 109-132.
- 정창권(2005).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 문학동네.
- 한국재활복지대학(200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杉野昭博(2007). **障害學 理論形成と射程**.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石川順(2002). **デイスアビテイの削減, インペアメントの交換**. 石川 順·倉元智昭(2002). **障害學の主張**. 東京: 目石書店.
- Charlton, J. I.(1998). *Nothing about Us Without Us: Disability Oppression and Empower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row, Liz(1996). "Including all our lives : renewing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in J. Morris, ed. *Encounters with Strangers : feminism and disability* London: The Women's Press, pp. 206-226.
- Finkelstein, V. (1980). *Attitudes and Disability*, New York: World.

- Freire, P. (1993). *Pedagogy of The Oppressed*. 남경태 역(2002). **페다고지**. 서울: 그린비.
- Foucault, M.(1975).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le prison*. 오생근 역(2003).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출판.
- Goffman, E. (1964). *Stigma*. 김용환 역. (1995). **오점(污點)**.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 Groce, N. E. (1985). *Everyone Here Spoke Sign Language*. 박승희 역(2003).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장애수용의 사회학**. 서울: 한길사.
- Morris, J. (1991). *Pride against Prejudice: Transforming Attitudes to Disability*. London: The Women's Press.
- Oliver, M. (1983). *Social Work with Disabled People*, London: Macmillan.
- Oliver, M.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Basingstoke: Macmillan and St Martin's Press.
-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New York: Palgrave.
- Turner, B. S.(1996). *The Body & Society*. London: Sage Pub. 임인숙 역(2002). **몸과 사회**, 서울: 몸과 마음.
- UPIAS(1976). *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y*, London: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 http://www.hanrw.ac.kr/new_irw/service/service_07_01.php
- <http://www.cms.daegu.ac.kr/disable>
- http://www.nable.or.kr/center_job/businessguide.asp

Developing Center for Disability Service for the Disabl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 : The Reality & Improvement Plan

Kim, Yong-Wook

Daegu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Kim, Nam-Jin

Kaya University Dep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Kwak, Jeong-Ran

Daegu University Docent

<Abstract>

This research, a basic research on "Developing Comprehensive Center for Disability Service for the Disabl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which aimed to develop model irrelative at an university scale, fulfill the personal desire and law requirement. For that purpose, looked into a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d change necessity of the point of view which see the disabled and importance of center for disability service at the university. And grasped also the actual condition of some center for disability service which have been installed and operated currently around the universit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model of centers to look into many problems to apply all university. And found out the many differences between a model and actual task. So consequently the development of new model needs absolutely.

Key Words : social model of disability, Center for Disability Service, Center Model for Disability Service

논문 접수: 2008. 4. 30 심사 시작: 2008. 5. 13 게재 확정: 2008. 6. 20